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7. 21 선고 2022가단501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9.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의 소유였는데 D는 2021. 8. 14. 사망하였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망인의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3/11), E, F, G, C(망인의 자녀들, 각 법정 상속지분 2/11)은 2021. 9. 1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425155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20. 12. 16. ‘C은 원고에게 27,243,934원 및 그 중 666,668원에 대하여는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47%의, 2,799,464원에 대하여는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8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C의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채무’라 한다).

다. C은 2020. 2. 1.부터 2022. 1. 25.까지의 기간 동안 본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갑 제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행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이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법정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망인의 혼외자인 관계로 C의 채무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협의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혜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목포시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아파트 대피소

1층 내지 12층 각 503.61㎡, 13층 499.11㎡, 14층 및 15층 각 306.87㎡

지하 대피소 523.4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전라남도 목포시 대 2273.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9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273.9분의 30.3155 ㎡

